

보도시점 2026.8.24.(월) 10:00 / 배포 2026.8.24.(월) 08:3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원칙과 자율점검 체계 마련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시 향후 재화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둘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해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하여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번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4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우: 30108)

* 팩스/전자우편: 044-200-5232 / 100ro@korea.kr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홍근 (044-200-4430)
		담당자	사무관	김노윤 (044-200-4431)

현행	개정안
I. 목적 및 구성 1. 목적 2. 구성 이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I.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구성</u> 이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u>권고사항</u>", <u>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운용 시 유의해야 할 "유의사항"</u>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III. 권고사항 5. 기타 권고사항 가.~다. (생략) 라. <u>대주주, 계열사 등을 위한 대출·투자 등을 지양하고 장래발생 빈도 등 회사 특성을 감안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해약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u>	III.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u><삭제></u>

다.

<예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예치 대신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은행예치금을 반환받아 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 200만주를 시가(3,500원)보다 높은 가격(5,000원)으로 매입한 경우

⇒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재무건전성을 해쳐 소비자피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등 관련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신 설>

<신 설>

IV. 유의사항

1.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환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운용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 또는 소비자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거래규모·조건이나
회수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면서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
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

<예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단기간의
고수익을 기대하며 가상자산을 추
종하는 레버리지 주식상품에 과도
한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 이와 같은 행위는 선수금의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한 시점에
자금회수를 어렵게 만들어 추후
재화등의 공급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거
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신의 계

열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거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배주주등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대신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상실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등과 자금, 채권, 부동산, 상품 및 용역 등을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배주주등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열사의 주식 200만주를 시장가격(3,500원)보다 높은 가격(5,000원)으로 매입한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부동산을 시장가격(30억원)에 비하여 저가(20억원)로 지배주주에게 매도하거나, 고가(40억원)로 지배주주로부터 매수한 경우

⇒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이 지배주주등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도록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 설>

의 재정건정성을 해쳐 소비자피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내부거래 등 관련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2.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거래 재화등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선수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지침(투자자산운용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선수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지침을 말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금운용지침에는 선수금 운용의 기본방향,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회계연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마다 선수금운용계획(자산운용계획 등 명칭을 불문

하고 선수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금운용계획에는 유동성 관리 계획, 투자계획, 위험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투자 결정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배주주등과의 거래,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공제조합, 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u>IV.</u> 재검토기한	<u>임직원, 회계, 재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V.</u> (현행과 같음)
-------------------------	---